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1.

발의자 : 김학용 · 이장우 · 임이자

문진국 · 신보라 · 이종배

정진석 · 강효상 · 박성중

정양석 · 김동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의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.

특히 최근의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원수단계, 즉 댐 상류에서부터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.

한편, 금번 물관리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의 상류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사업 등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사업 참여 방안이 필요함.

이에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

고자 하는 것임(안 제18조의2).

법률 제 호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
 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의2(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)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의2(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 지역의 범위와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